

고성군 당향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95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20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9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유아(유치원생)에 대한 입장료 징수규정을 정하고 입장료 납입기일 변경 등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 (안 제1조)
나. 유아 입장료 징수 (안 제4조)
다. 입장료 납입 기일 변경(안 제6조)
라. 입장권 및 주차권 서식 변경(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)
마. 컨벤션홀 사용 신청서 및 사용권 서식 신설(안 제7조, 별지 제2호 및 3호서식)
바. 행위의 제한 내용 신설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 2006-57호(2006. 1. 24~ 2. 13)
⇒ 의견 제출사항 없음
나. 관련법령 및 근거 : 관광진흥법 제 64조(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징수면제 대상을 당초 6세이하에서 2세이하로 조정하고 명확한 입장료 징수 관리를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군금고 불입시한을 명시 하였으며 켄벤션홀의 시설이용료를 1회(4시간)사용시 5만원, 1일(8시간기준)사용시 1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
- 관광지내 시설물의 훼손방지과 취사.음주. 고성방가등의 행위 제한규정을 두어 위반한 행위자는 퇴장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입장료 면제 연령이 6세이하에서 2세이하로 낮추어 유아에 대한 입장료 징수가 타당한지 등을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입장료 징수대상을 7세에서 3세로 낮추었는데 어린아이에 대하여 무리하게 징수하는 것은 아닌가? 타 관광지의 사례는 있는가?
- 답 : 관광지 입장객중 다수가 3~6세 어린이이며 수목이나 시설의 훼손을 가장 많이 시키는 연령층이므로 입장료를 징수하되 할인하여 징수하고자 하며, 타관광지의 경우 3세이상 또는 5세이상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 징수사례가 있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